북일고 학칙

(당초인가) 충남교위 관리 1041. 1 - 1714(‘75. 11. 24)
‘75. 11. 24.
(개 정) 충남교위 관리 1041. 3 - 1413(‘76. 10. 30)
‘76. 10. 30.
(개 정) 충남교위 관리 1040 - 1396(‘77. 11. 1)
‘77. 11. 1.
(개 정) 충남교위 관리 1040 - 1750(‘77. 12. 29)
‘77. 12. 29.
(개 정) 충남교위 관리 1041 - 1290(‘78. 09. 15)
‘78. 9. 15.
(개 정) 충남교위 관리 1040 - 1664(‘81. 10. 02)
‘81. 10. 6.
(개 정) 충남교위 관리 1040 - 528(‘83. 06. 07.)
‘83. 10. 28.
(개 정) 충남교위 관리 25412 - 674(‘86. 06. 30)
‘86. 11. 1.
(개 정) 충남교위 관리 25412 - 723(‘87. 08. 28)
‘87. 10. 2.
(개 정) 충남교위 관리 25412 - 481(‘88. 08. 10.)
‘88. 9. 1.
(개 정) 충남교위 관리 25412 - 492(‘89. 09. 22)
‘89. 9. 30.
(개 정) 충남교위 관리 25412 - 368(‘90. 08. 01)
‘90. 8. 27.
(개 정) 충남교위 관리 25412 - 316(‘91. 07. 22)
‘91. 8. 5.
(개 정) 충남교위 행정 25412 - 446(‘92. 07. 13)
‘92. 7. 20.
(개 정) 충남교위 행정 25412 - 614(‘93. 08. 19)
‘93. 8. 24.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12 - 630(‘94. 08. 29)
‘94. 9. 10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12 - 58(‘95. 01. 20)

‘95. 1. 23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14 -505(‘98. 06. 05)
행정 81412 -620(‘98. 07. 02)
‘98. 7. 9.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14 -603(‘99. 05. 28)
‘99. 6. 8.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11 -982(‘01. 09. 20)
‘01. 9. 22.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40-275 (‘02. 03. 21)
‘02. 04. 16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11-382(‘04. 04. 07)
‘04. 06. 24.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 81411-626(‘04. 06. 17)
중등교육과-1161(‘04. 04. 19)
‘05. 09. 01.
(개 정) 충남교육청 재정지원과-2439(‘05. 03. 04)
행정지원과-6885(‘05. 08. 31)
‘05. 11. 21.
(개 정)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과-8735(‘05. 04. 04)
행정지원과-10000(‘05. 11. 21)
‘06. 09. 20.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지원과-8278(‘06. 08. 29)
‘09. 02. 09.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지원과-292 (‘09. 01. 09)
‘09. 12. 28.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지원과-11940(‘09.12.28)
‘09. 12. 28.
(개 정) 충남교육청 행정지원과-11940(‘09.12.28)
‘12. 09. 19.
(개 정) 북일고등학교-14980(‘12.09.19)
‘13. 12. 26.
(개 정) 북일고등학교-19142 (‘13.12.26)
‘18. 06. 22.
(개 정) 북일고등학교 -9192 (‘18.06.22)
‘18. 09. 07.
(개 정) 북일고등학교 -13006 (‘18.09.07)
‘19. 10. 22.
(개 정) 북일고등학교 -16334 (‘19.10.23)
‘20. 02. 06.
(개 정) 북일고등학교 - 1749 (‘20.02.07)

북일고등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06.24개정)
제 2조 (명칭) 본교는 북일고등학교라 한다.(2009.02.09개정)
제 3조 (위치) 본교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번지에 둔다.(2012.09.19개정)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02.07개정)
제 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020.02.07개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한 특례입학대상자.(2004.06.24개정)
5. 국제과는 해외 수학자인 경우 9학년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 6조 (학과) 본교에는 일반계 보통과와 국제과를 둔다.(2009.12.28개정)
제 7조 (학급수)
1. 본교의 학급 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1조에 의하여 매년 충청남도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2. 국제과는 남・여 공학으로 하며 각 학년 당 학급수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승인에 따른다.

제 8조 (학생정원)
1. 본교의 학생 정원은 매년 충청남도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생수로 한다.
2. 국제과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30명으로 하며, 총 정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승인에 따른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시험

제 9조 (교육과정)
1. 본교의 보통과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교장이 편성 운영한다. (2020.02.07개정)
2. 국제과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승인 시 제출된 국제과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3. 국제과는 학생의 학업능력과 진로 희망에 따라 교과이수에 학년 구분 없이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4. 국제과의 학점의 기준은 한 학기 17주(주당1시간) 이수인 경우 1학점으로 한다. 단, 과학과의 실험 교과목은 주당 2시간을 이수한 경우 1학점으로 한다.

5. (삭제)(2013.12.26개정)

6. (삭제)(2013.12.26개정)

제 9조의 2 (과외 수업의 금지)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충청남도 교육감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생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방과 후 교육활동은 허용한다.(2009.12.28개정)

② 관할청이 인정한 과외수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4.06.24개정)

③ (삭제 2002.04.16개정)

④ 본 조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신설인가 1981.10.02 관리 1040-1664)

제 9조의 3 교외체험학습 (2020.02.07개정)

① 교외체험학습을 하려는 학생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연간 15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단, 반일(4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기간은 정기고사일을 피한다. 단, 학교장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인정점부여는 북일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③ 교외체험 학습을 하려는 자는 최소 1일전까지 체험학습신청서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체험학습 후 7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인정 공결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증빙자료는 졸업 후 1년까지 보관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020.02.07개정)

제11조 (고사)

1. 정기고사는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하며 1회고사와 2회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9.12.28개정)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보통과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4조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2020.02.07개정)

제12조의 2 국제과는 신입생의 경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되 재학생의 경우 2월 1일부터 1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1월 말일까지로 한다.(2020.02.07. 개정)

제13조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② 공휴일
   ③ 개교기념일(3월 6일)
   ④ 하기휴가(2004.06.24개정)
   ⑤ 동기휴가(2004.06.24개정)
   ⑥ 학년말 휴가(2004.06.24개정)
   ⑦ 학교장이 정하는 특별 휴가일(2004.06.24개정)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3.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4.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 및 학습과제를 과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의 (수료)

① 학교장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조기졸업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013.12.26. 신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3.12.26. 신설)
   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교과목별 평가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 기준의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라.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③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2013.12.26. 개정)
④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규정으로 정한다.(2013.12.26. 개정)

제1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규정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 한다.(2013.12.26. 개정)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편입학 시기는 충청남도 교육청 전·편입학 업무시행계획에 의한다.

제17조 (입학방법)

1.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2004.06.24개정)
2. 국제과의 경우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8조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허가한다. 다만,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중퇴생 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4.06.24개정)

제20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전 재적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2004.06.24개정)

제22조 (삭제)(2004.06.24개정)

제23조 (삭제)(2004.06.24개정)

제8장 학생 생활

제24조 (휴학)

1.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2004.06.24개정)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 할 수 없다.
3.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4.06.24개정)

제26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2004.06.24개정)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3.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2.09.19신설)
4. 훈육·훈계는 구두주의, 반성문 쓰기, 상담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지나치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비인격적 행위는 금지한다.(2020.02.07개정)
5. 징계의 종류는 그 정도에 다라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생징계규정'으로 학교장이 정한다.(2020.02.07개정)
6.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으로 학교장이 정한다.(2012.09.19.신설)
7. 정기고사 중 부정행위에 관한 유형과 사항은 당해 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계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2018.09.06. 신설)

제28조 (퇴학처분)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퇴학을 명할 수 있다. (2004.06.24 개정)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당 해년도 일반계 사립인문고등학교 납입금의 300% 이내로 한다.(2009.12.28개정)

제30조 (경제사정 곤란자 등의 공납금 감면 기준) 경제사정 곤란자등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학비가 지원되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공납금을 면제 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2009.12.28개정)

제31조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2009.12.28개정)

제10장 기 숙 사

제32조 (기숙사 입사)
1.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2.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06.24 개정)
3. 기숙사생의 복무, 관리비 및 운영비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2009.12.28개정)

제11장 학생 자치 활동 (2012.09.19신설)

제33조(학생자치활동 규정)
1. 학생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학생회,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자치활동규정'으로 정한다.(2012.09.19신설)

2. ‘학생자치활동규정’은 초·중등교육법 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2012.09.19.신설)

제34조 (삭제)(2004.06.24개정)

제12장 학칙개정 절차

제35조 (학칙개정 절차)

1.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2012.09.19신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한다.(2012.09.19신설)
3.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2012.09.19신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09.19신설)
5.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12.09.19신설)
6. 공고 기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칙 제·개정의 최종 시안을 마련한다.(2012.09.19신설)
7.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의 최종 시안을 자문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2012.09.19신설)
8. 학교장은 학칙을 승인한 후 학칙을 공포하고, 홈페이지 탑재 20일 이상·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정보를 공시한다.(2012.09.19신설)
9.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2012.09.19신설)
   가. 학칙 제·개정위원회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
   라. 학생회 대표
   마.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제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2013 .12 9 . 신설)

제3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교권보호위원회는 경미한 교권 침해 및 심각한 교권 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이를 승인한다.
①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경미한 교권침해 : 경미한 폭언.욕설, 수업진행방해 등
②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 : 교사 폭행.협박, 성희롱 등
③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기타(전학 등) 등
④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 형사처벌, 기타 등
⑤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안내,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해당 교원 법률상담 신청 안내 등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30. 관리 25412 - 674)
이 학칙은 198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1987. 8. 28. 관리 25412 - 723)
이 학칙은 198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8. 10. 관리 25412 - 481)
이 학칙은 198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22 관리 25412 - 492)
이 학칙은 199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1 관리 25412 - 368)

이 학칙은 199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7. 22. 관리 25412 - 316)

이 학칙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7. 13 행정 25412 - 446)

이 학칙은 199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9 행정 81412 - 614)

이 학칙은 199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29. 행정 81412 - 630)

이 학칙은 199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행정 81412 - 5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6.5 행정 81414-505, 1998.7.2 행정 81412-6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장 제8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5.28 행정 81414-603)

이 학칙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9.20 행정 81411-982)

이 학칙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3.21 행정 81440-29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7 행정-81411-626, 2004.04.19 중등-1161)

이 학칙은 2004년 6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4 재정지원과-2439, 2005.08.31 행정지원과-6885)

이 학칙은 200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04 중등교육과-8735)

이 학칙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8.29 행정지원과-8278)

이 학칙은 200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9 행정지원과- 292)

이 학칙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30. 관리 25412 - 674)

이 학칙은 198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1987. 8. 28. 관리 25412 - 723)

이 학칙은 198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8. 10. 관리 25412 - 481)

이 학칙은 198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22 관리 25412 - 492)

이 학칙은 199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1 관리 25412 - 368)

이 학칙은 199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7. 22. 관리 25412 - 316)

이 학칙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7. 13 행정 25412 - 446)

이 학칙은 199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9 행정 81412 - 614)

이 학칙은 199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29. 행정 81412 - 630)

이 학칙은 199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행정 81412 - 5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6.5 행정 81414-505, 1998.7.2 행정 81412-6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장 제8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5.28 행정 81414-603)

이 학칙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9.20 행정 81411-982)

이 학칙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3.21 행정 81440-29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7 행정-81411-626, 2004.04.19 중등-1161)

이 학칙은 2004년 6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4 재정지원과-2439, 2005.08.31 행정지원과-6885)

이 학칙은 200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04 중등교육과-8735)

이 학칙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8.29 행정지원과-8278)

이 학칙은 200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9 행정지원과- 292)

이 학칙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8 행정지원과-11940)

이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9.19 북일고등학교-14980)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3.12.26 북일고등학교-19142)

이 학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22 북일고등학교- 9192)

이 학칙은 2018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9.06. 북일고등학교-13006)

이 학칙은 2018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3 북일고등학교- 16334)

이 학칙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06 북일고등학교- 1749)

이 학칙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